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의 불법 비행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 됨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세부 사항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의 주기·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반 서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의2제1항”을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항공업무 수행자(이하 “항공업무 수행자”라 한다)”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및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관련업무종사자”로,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한 기관”을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이하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항공업무 수행자”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1조의2제1호”를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로, “운전업무종사자”를 “항공관련업무종사자”로 한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안전교육의 시행)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항공관련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교육을 연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표준작업절차

2. 항공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수칙

3. 항공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②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위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피해 사례

2.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③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종료일부터 14일 내에 지방항공청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중전의 제19조의3)의 제목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9조의3)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의2제3항”을 “법 제31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5 및 제4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관리 점검의 시기 등)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보호구역 내 CCTV, 과속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 ① 영 제50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란 별지 제4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를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4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를 말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제19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의 2배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가. 공항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 1)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 또는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 제1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20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40일 운전업무승인취소명령
나.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 제2호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1일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다.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 제3호	

1) 제한속도를 10km/h 미만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1일
2)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한 경우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3)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한 경우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4)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 밑으로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5)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한 경우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6) 차량 및 장비 운행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경우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8일
7) 차량 및 장비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7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1일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8일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8일
라.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 제4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1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7일
마.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 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1)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한 경 우 2)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 닌 다른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 험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 제5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1차 위반 : 업무정지 1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바.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 제6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20일
사.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 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 외),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 거나 환각제 복용한 상태에서 업 무를 수행한 경우 1) 보호구역 내에서 흡연, 음주 또 는 환각제를 복용하거나 음주 또 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운 전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 우 2)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 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 제7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운전업무승인취소명령

아. 그 밖에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차량·장비 사용 시 공항운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통행 또는 견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 제8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1일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	------------------------	---

비고

처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정지: 일정기간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소속기관에서 부여받은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전업무정지: 일정기간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운전업무 종사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전승인 취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승인을 취소한 것을 말한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지급일자	지급기관(지급자)	
	지급금액 금 원		

「공항시설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제1항·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수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등)	→ 심의·의결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등)	→ 결정서 통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공항시설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제4항·제7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OOOOO

직인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공항시설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OOOOO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 7. (생략) 8. <u>문화재</u>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 14. (생략) ② ~ ⑥ (생략)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국가유산</u> ----- ----- ----- --- 9. ~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안전관리기준의 시행)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u>항공업무 수행자</u> (이하 “ <u>항공업무 수행자</u> ”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과 공항의 지형 및 구조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u>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한 기관</u> 에 나누어 줄 것	제19조의2(안전관리기준의 시행) ①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 -----. 1. ----- ----- <u>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및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관련업무 종사자</u> ----- ---- <u>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이</u>

2.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항공업무 수행자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 제1호에 따라 차량 운전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하려면 운전업무종사자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것

② (생략)

<신설>

하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라 한다)-----

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

3. -----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

----- 항공관련업무종사자-----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안전교육의 시행)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항공관련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교육을 연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표준작업절차

2. 항공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

	<u>한 안전수칙</u> <u>3. 항공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u> <u>한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 대</u> <u>책</u> ② <u>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u> <u>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안</u> <u>전교육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u> <u>에는 30일 이내에 지상안전관리</u> <u>기준을 위반한 종사자를 대상으</u> <u>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u> <u>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u> <u>한다.</u> 1. <u>해당 위반 사항으로 인해 발</u> <u>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u> <u>과 피해 사례</u> 2. <u>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에 관</u> <u>한 사항</u> ③ <u>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제</u> <u>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u> <u>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종료일</u> <u>부터 14일 내에 지방항공청장</u> <u>및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u> <u>한다.</u>
<u>제19조의3(항공업무 수행자에 대</u> <u>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1조의</u> <u>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u>	<u>제19조의4(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u> <u>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1조</u> <u>의3제3항-----</u>

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 설>

<신 설>

-----.

제19조의5(관리 점검의 시기 등)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 1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보호구역 내 CCTV, 과속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서 등) ① 영 제50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란 별지 제4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를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4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를 말한다.